광고분야 ; 주류의 광고 금지 사항 등

# 알콜분 17도 이상 주류 광고 방송 금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함양과 자발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세부 집행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광고분야, 금연 및 절주를 위한 조치, 보건교육 실시 등에 대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연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 주〉

## Ⅰ. 목적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가치와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그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계몽함으로써 법령집행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함.

## Ⅱ. 방침

○이 법령의 적용을 받는 주류 및 제조담배의 제조자와 판매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이 법을 준수하는데 있어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

○국민들로 하여금 금연, 절주 등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건강의식을 개선하고 나아가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관련단체 등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

○국민건강을 위한 사회규범을 계도중심으로 운영하되 그에 따른 위법성을 강조함

으로써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게 하도록 유도

## Ⅲ. 세부집행계획

### 1. 광고분야

**가. 관련조항 : 법 제7조,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및 별표 1**

**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

(1)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광고 금지사항

○음주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음주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표현

○임산부나 미성년자의 인물 또는 목소리를 묘사하는 표현

○다음에 해당하는 광고 방송을 하는 행위

－텔레비젼(종합 유선방송을 포함한다) : 7시부터 22시까지의 광고방송

－라디오 : 17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의 광고방송과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광고방송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광고노래를 방송하거나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표현

○알콜분 17도 이상의 주류를 광고방송하는 행위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행위.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금지

**다. 행정사항**

(1) 광고의 심의 및 변경 또는 금지명령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광고내용을 변경하거나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광고 방송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기관인 보건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에 설치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법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단,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하되

○지면 또는 방송 등 매체의 주된 보급지역 또는 방송연결망이 전국적인 신문·잡지와 광고방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치함.

(2) 시행일 : '96. 1. 1

(3) 벌　칙 :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적용)

〈자료 : 보건복지부〉